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23년 추석 명절 대비 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」 설치·운영 관련 협조요청

1.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2023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,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23. 8. 7. ~ 2023. 9. 26. 기간 동안 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」를 설치·운영할 예정입니다.
3. 이와 관련,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」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귀 단체는 소속 회원사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>

- 가.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
- 나. 하도급대금을 장기(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)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다.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(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)하는 행위
- 라.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,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(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)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

붙임: 권역별 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」 설치 현황 1부. 끝.

공정거래위원회



수신자 중소기업중앙회장, 대한전문건설협회장

행정사무관 **백성하** 하도급조사과 전결 2023. 8. 4.
장 **이승규**

협조자

시행 하도급조사과-443 (2023. 8. 4.) 접수

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,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 (여 / <http://www.ftc.go.kr>
진동)

전화번호 044-200-4587 팩스번호 044-200-4655 / sam419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더불어 잘사는 경제 -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